



www.ssis.or.kr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Public Sector Case Management
Joint Cooperation Task Guide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 협력 업무안내 개정 대조표

구분	2019년 기존 내용	2020년 개정 내용	페이지
[명칭변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체
1. 사업 개요			
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현행화) 	p.10~12
2. 드림 스타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표] 만 12세 미만(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 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 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의뢰절차) 해당 아동 거주지역(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 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표] 만 12세 미만(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 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 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의뢰절차) 해당 아동 거주지역(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 사전확인* 후 공문을 통해 의뢰 * 사전확인 내용: 드림스타트 및 지역사회 내 서비스(복지관, 바우처 등) 이용 여부 등 	p.14
4. 의료급여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 장기입원 후 퇴원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재가급여 제공('19.6.~, 4개 시·군·구 시범사업*) *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지역에서 실시('19.1.지자체 공모, '19.3.지역선정, '19.6.사업실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 장기입원 후 퇴원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재가급여 제공(2019년 6월~, 2년간 실시예정) 	p.17
6. 중독사례 관리 (중독관리 통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변경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 	p.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기준 및 절차 [표]의뢰사례: AUDIT-K를 이용한 사전 스크리닝 필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기준 및 절차 [표]의뢰사례: 표준화된 평가도구(AUDIT-K 등)를 이용한 사전 스크리닝 필요 	p.21

구분	2019년 기존 내용	2020년 개정 내용	페이지
7. 정신건강 사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념 •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p>※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p>	p.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개입, 조기발견 	
8.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등, 탈 빈곤·자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있는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 빈곤과 빈곤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가구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p>*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p>	p.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체계 -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수행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체계 -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역량강화 등 수행 	p.25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모형 안내			
1.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된 대상자* 접수 [표] *발굴된 대상자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된 대상자* 접수 [표] *발굴된 대상자 - 민간 및 공공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부록3.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p.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 시 참석 협조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 시 참석 협조 <p>※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가능 활용(부록3.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p>	p.30

구분	2019년 기존 내용	2020년 개정 내용	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종결: 의뢰 기관에 종결 통보(의뢰 기관은 종결의 적절성 확인)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종결 시 의뢰 기관에 종결 통보, <u>통보 받은 의뢰 기관은 종결의 적절성 확인</u> 	p.30
2. 아동통합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사례관리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아동 사례관리 제한 연령 도래로 인한 종결 시 지속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 이후 대상자 선정(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대상자 선정 사례회의 결과 및 선정 여부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통보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발굴한 경우 아동의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 이후 가구원 사례관리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 아동 사례관리 제한 연령 도래로 인한 종결 시 지속적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p.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이후 의뢰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종결 후 의뢰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p>(변경 및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부록3.법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이후 <u>아동 관련</u> 의뢰 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종결 후 <u>아동 관련</u> 의뢰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구분	2019년 기존 내용	2020년 개정 내용	페이지
4. 방문형 서비스 연계 (읍·면·동 -방문건강 -노인맞춤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p>(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 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p>※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부록3.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p>	p.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대상자 관리: 독거노인 관리자 명단(시군구 제공)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 의뢰 대상자 	<p>(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자 관리: 취약노인 관리자 명단(시·군·구 제공)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의뢰 대상자 	
Ⅲ.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항목삭제]	Ⅲ.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개정 내용 삭제	(삭제)	
[부록] (신설)			
부록1.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별 지침		(신설) 각 사업별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관련 지침 내용 수록	p.39~47
부록2. 유관 기관 서비스 소개		(신설) 금융, 고용, 주거, 의료 관련 연계 서비스 및 기관 정보 수록 * 시민금융진흥원 등 5개 기관 및 서비스	p.49~60
부록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신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 방법 안내 * 의뢰체계 및 서비스보장기관 안내 등	p.61~70

CONTENTS

I. 사업 개요	9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3
3. 방문건강관리	15
4. 의료급여사례관리	17
5. 자활사례관리	19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20
7. 정신건강사례관리	22
8.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24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모형 안내	27
1.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28
2. 아동통합 보호	31
3. 보건복지 연계	33
4. 방문형서비스 연계	35
5. 자활-정신보건 연계	37
[부록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관련 사업별 지침	39
1.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40
2. 방문건강관리	41
3. 의료급여사례관리	43
4. 정신건강사례관리·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45
5.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46
[부록2] 유관 기관 서비스 소개	49
서민금융진흥원 / 고용복지+센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토지주택공사 / 지방의료원	
[부록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61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 기관별 제공서비스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1. 사업개요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0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3
3. 방문건강관리	15
4. 의료급여사례관리	17
5. 자활사례관리	19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20
7. 정신건강사례관리	22
8.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24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개념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목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사업대상

만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 특화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유사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유사중복사업의 후순위에 해당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선순위로서 장기요양 등급자가 장기요양을 포기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함(신청시점 장기요양등급이 없더라도 이전에 장기요양등급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장기요양등급 판정 내역은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신청시점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시·군·구는 각 사업의 특성, 실질적 제공 내용 및 돌봄 필요성 등을 고려·판단하여 사업별 유사중복 여부를 사전에 정해야 함(예: 00시 도시락배달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00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유사중복 해당/미해당)

● 주요내용

사업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조사·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필요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직접 서비스

① 안전지원

- 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점검·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안전· 안부확인(방문· 전화· ICT),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② 사회참여

-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③ 생활교육

-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악화를 지연·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

④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출동행, 가사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비스 내용) 이동· 활동지원, 가사지원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은 물품후원, 자원봉사자 등 민간후원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
 - ※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지만 민간후원 자원의 경우 후원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관에 후원을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원자원 연계 기능 수행 필요
-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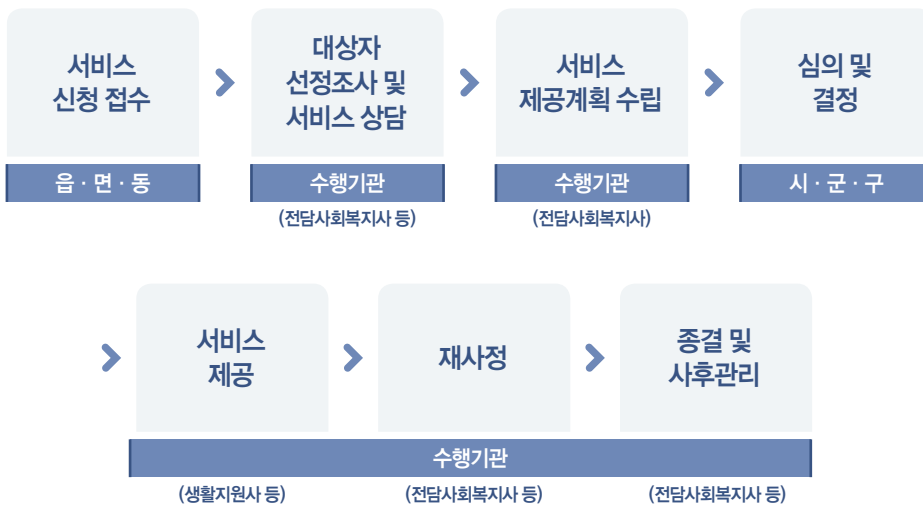
특화서비스

- 은둔형·우울형 노인을 대상으로 척도(우울감, 자살생각, 고독감 등) 등을 활용하여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
 - ※ 일부 도시형 수행기관에서 수행

사후관리 서비스

-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 실시

사업 수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이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의뢰 가능 (사회, 신체, 정신영역을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됨)
- (의뢰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 신청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 개념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대상

0세(임산부) ~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아동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

● 주요내용

사업 내용

아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 파악한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 사례관리 지원

▣ 드림스타트 영역별 지원 내용(예시)

영역	지원 내용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프로그램 등
부모·가족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사업 수행

-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로 드림스타트 설치 운영
- 시·군·구 내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서 사업 수행(보건·복지·교육(보육) 분야별 전담공무원 및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만 12세 미만(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등) 아동 중 건강,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 및 욕구로 인해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 (의뢰절차) 해당 아동 거주지역(시·군·구)의 드림스타트에 사전확인* 후 공문을 통해 의뢰

* 사전확인 내용: 드림스타트 및 지역사회 내 서비스(복지관, 바우처 등) 이용 여부 등

● 개념

관련법령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사업목표

지역주민의 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사업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 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 주요내용

사업 내용

보건소 내 간호사,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소그룹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등 실시

- 계절 및 자연재난 관련 사전 안전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거나 어린이 및 노인의 학대·방임, 가정 폭력으로 인한 취약 대상(개인, 가정 등) 발굴로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최소화
- 금연, 절주, 규칙적 신체활동, 균형 있는 영양 섭취 등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질환 발생 사전 예방
-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암 등 주요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 임신부와 신생아의 잠재적인 건강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건강위험군인 영유아에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노인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기능의 회복, 유지 및 증진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장기요양상태를 사전 예방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가진 다문화가족 관리
- 감염성 질환 및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북한이탈주민 관리
- 장애 조기발견, 2차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 등 지속적 관리로 장애의 최소화 및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

사업대상

- ① 대상자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 검진자 및 생애전환검진자 중 검진사후관리 동의자 검진 결과 정보 연계, 구청 사회복지과, 주민센터 등에 의뢰된 자
- ② 대상자 등록: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관리에 동의한 경우 전문인력은 기초조사표와 건강상담 등으로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군 분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2개군(집중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또는 3개 군(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으로 운영가능
- ③ 군별관리내용: 분리된 군은 건강관리계획에 따라 적절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④ 대상자 평가: 군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후 재평가 등을 통해 추후 관리 시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회, 문화, 경제적 건강 취약계층(건강위험군, 질환군) 및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 75세 이상 노인부부 가구 중심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의뢰절차)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대상자에게 보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보건서비스 의뢰

4

의료급여사례관리

● 개념

관련법령

의료급여법 제5조의2(사례관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사업목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건강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

사업대상

의료급여수급권을 취득한 신규 전체 대상자, 질병 대비 과다의료이용자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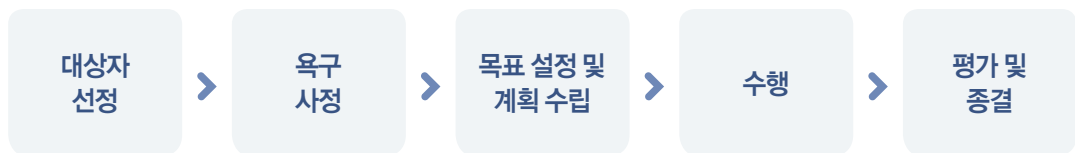
사업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을 처음 취득한 전체 수급자를 대상으로 초기에 의료급여 제도 및 적정 의료이용 안내를 통해 잠재적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예방적 관리
-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부 적정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도 이용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 자원연계 등을 통해 적정 의료이용 유도
- 장기입원 후 퇴원한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의 재가급여 제공(2019년 6월~, 2년간 실시예정)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시·도 의료급여 담당부서,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

※ 사례관리 업무 흐름도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의료쇼핑, 중복처방, 입퇴원 반복, 사회적 입원 등 질병 대비 부적정
과다 의료 이용하는 대상자
- (의뢰절차) 의뢰 전 업무 담당자와 상의한 후 공문으로 요청

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지원내용 등 안내가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발견할 경우 시·군·
구청 의료급여 담당에게 연락

● 개념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제15조에 근거하여 자활근로사업 시행

사업목표

참여자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와 환경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활서비스의 효율성,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것

- ① 참여자의 사회, 경제적 자활자립 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
- ② 참여자의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획득 역량 강화
- ③ 참여자의 심리정서적·신체적 안정 및 강화로 사회진출에 대한 자신감 회복

사업대상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주민 중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희망 참여), 일반수급자(희망 참여), 급여특례가구원(희망 참여), 차상위자(희망 참여), 시설수급자(희망 참여)

●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 근로 기회 제공) 자활근로사업단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자활이 필요한 주민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사업 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개인별 자립경로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실행) 지역자활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자립경로(IAP) 및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전인격적·다차원적 자립 여건 조성
- (지역사회 지원 연계) 문제해결이 필요한 주민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의뢰기준 및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일반 사례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등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 자활사업담당자를 통한 의뢰

6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 개념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 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

사업목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중독자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대상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기타 중독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 주요내용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중독조기발견 및 단계개입서비스	조기선별 및 단기치료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및 의뢰체계 구축, 심층 사정평가 수행, 교육 및 집단개입프로그램 수행
중독질환 관리 및 가족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방문보건팀, 주민센터, 복지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팀)과의 신규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중독폐해예방 및 교육	선택적집단을 대상으로 예방 및 지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및 계몽사업
지역사회안정망 조성	중독질환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 전달체계, 보건복지, 법무체계 등 지역인프라 구축, 대상자 및 서비스 연계, 의뢰
지역진단 및 기획	지역 정신보건계획 수립,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서비스 기획, 자원조정 및 중재,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도 조사와 우선순위 선정

의뢰기준 및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응급사례	알코올 섭취 상태에서 자·타해가 이루어지거나 신체적 응급상태인 경우	경찰 및 119 구급대 호출 후 필요 시 응급입원 조치
의뢰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자살 및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된다. • 알코올 중독에 대한 사정평가 및 치료기관 의뢰가 필요하다. • 알코올 중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 알코올 중독의 잦은 재발로 입퇴원을 반복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이력 및 자타해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 표준화된 평가도구(AUDIT-K 등)를 이용한 사전 스크리닝 필요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필수) • 필요 시 방문 동행(주취상태가 아닐 것, 읍·면·동 보조인력 동행) • 중독이력에 대한 정보제공

7

정신건강사례관리

● 개념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례 및 지침, 기타 관련 근거 준수 가능

사업목표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

사업대상

정신건강복지법을 근거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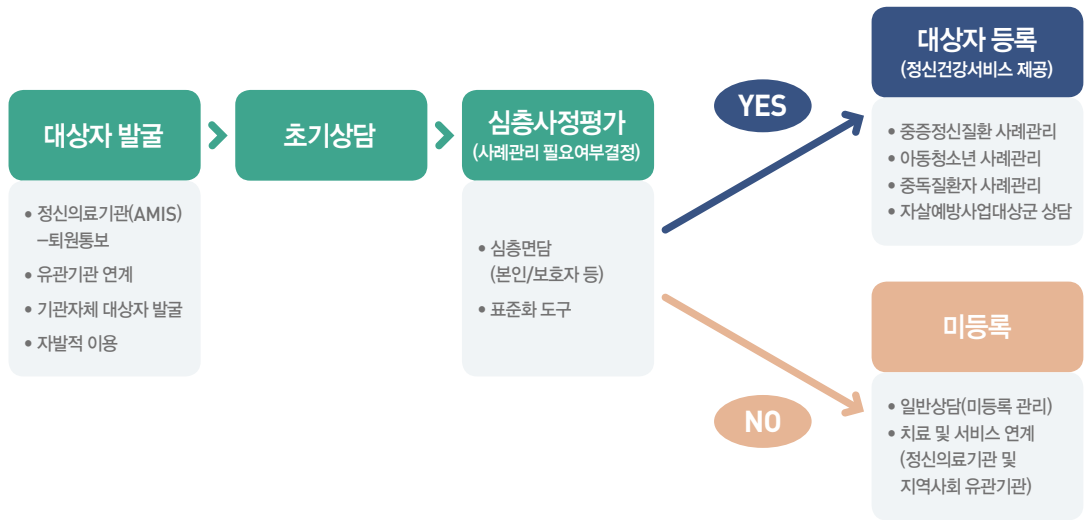
● 주요내용

사업 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위기개입, 조기발견
- 자살예방사업: 자살고위험군 사례관리, 위기개입, 생명존중문화조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 중독관리사업: 중독자회복 촉진 및 사례관리, 위기개입

※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상담전화 ☎ 1577-0199

사업 수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정신질환으로 자살 및 자타해의 위험성이 의심 된다.
- 정신질환이 의심되나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 약물 및 증상관리가 안되어 잦은 재발을 하고 있다.
- 정신병원 퇴원이후 지역사회 적응이 필요하다.

- (의뢰절차) 응급 · 위기 · 집중사례별 절차

구분	기준	의뢰방법
응급사례	자살을 시도하는 상황	경찰 및 119 구급대 호출 후 필요 시 응급입원 조치
위기사례	자살시도 경험이 있거나,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 · 타해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 시 방문 동행(의뢰기관 사례관리자와 동행)
집중사례	반복적인 자살사고를 표현하는 등 자살 위험이 의심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살 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동의 필요 시 방문 동행(의뢰기관 사례관리자와 동행)

● 개념

관련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통합사례관리)

사업목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의 탈 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도 능동적 대응

중점사업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자활 지원 가능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 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중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청중장년 1인가구, 돌봄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 가구, 휴·폐업자, 실직자, 자살 고위험군 등

● 주요내용

사업 내용

- (대상자 발굴)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군·구 각 부서,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발굴된 대상자에 대해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서 초기상담 실시
- (통합사례관리 실시)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이관 민원 처리
- (자원관리 등) 희망복지지원단이 중심으로 수행하되,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수행체계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복지담당공무원)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통합사례관리 담당으로 배치

- (통합사례관리사)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사례관리 교육, 슈퍼비전 제공, 역량강화 수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 제2항에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근거 마련('17.9.22.시행)

의뢰기준 및 절차

- (의뢰기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안전(학대, 폭력, 방임)과 정신건강의 문제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 긴급지원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있다.
- 차상위계층 빈곤가구.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의 다양한 욕구가 있다.

- (의뢰절차) 대상자 소재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사전 협의 후 공문으로 의뢰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 협력 모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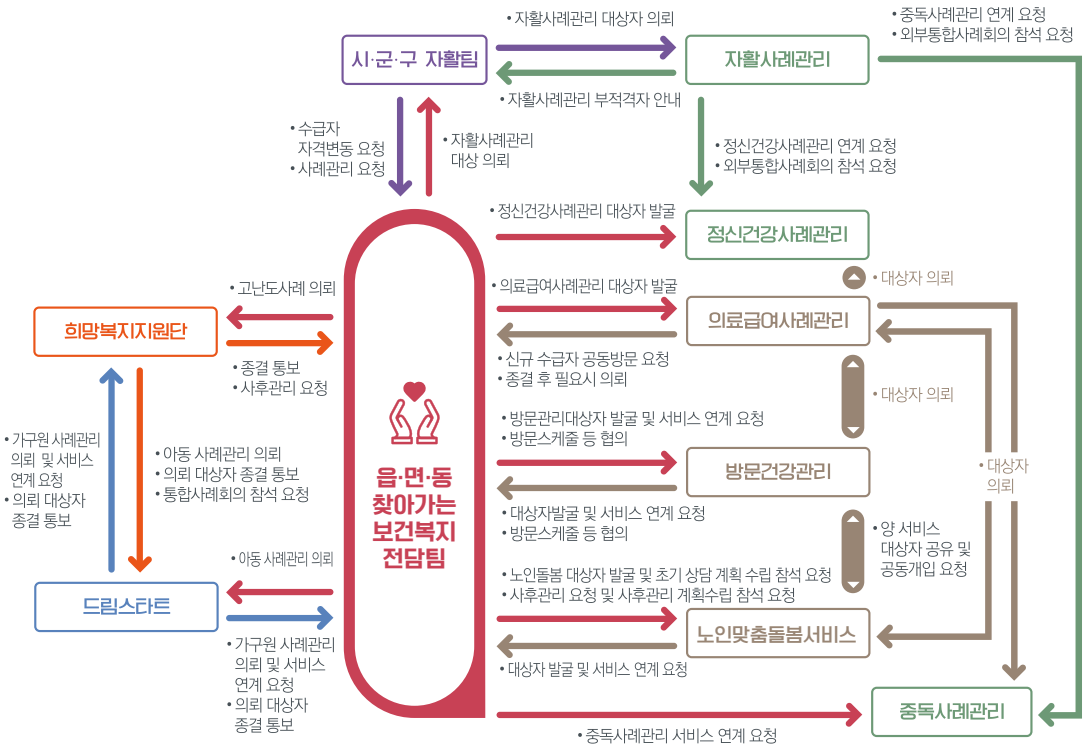
1.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28
2. 아동통합 보호	31
3. 보건복지 연계	33
4. 방문형서비스 연계	35
5. 자활-정신보건 연계	3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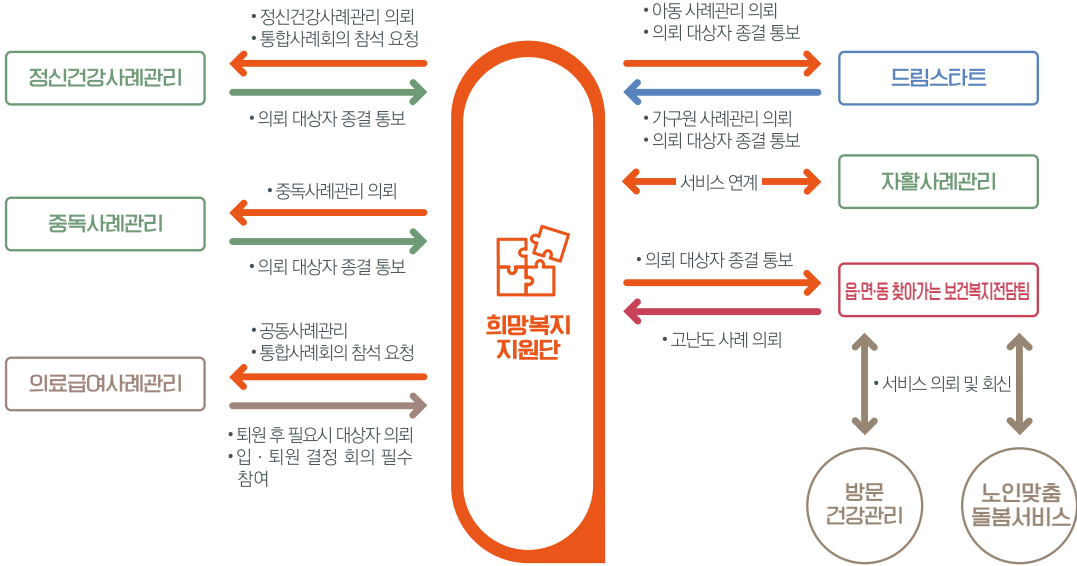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읍·면·동에서는 다양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에 대하여 접수·초기 상담 등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며, 희망복지지원단은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연계를 위해 사례회의 정례화 및 구조화 등 수행

읍·면·동 게이트웨이



●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조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종합 사정을 강화하여 발굴된 대상자를 해당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뢰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

희망복지지원단

– 타 사례관리 사업 간 사례회의 등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 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발굴된 대상자* 접수

* 발굴된 대상자

- ① 지역 주민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
- ② 다양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부터 발굴된 대상자
 - 자활사례관리의 부적합자여서 읍·면·동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 변동이 요청되어 의뢰된 자
 - 방문형 서비스 인력이나 의료급여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자 등
- ③ 민간 및 공공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의뢰된 대상자(부록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 사회서비스가 연계가 필요하다고 의뢰된 대상자에게 초기상담 진행
- 초기상담 후, 대상자 의뢰(고난도 사례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 그 외 다른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 해당 대상자를 의뢰)
- 초기상담 후,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대상자에게 욕구사정 및 위기도 조사를 진행
- 욕구사정 시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의 필요성을 타진(통합사례관리의 욕구사정 및 위기도조사 외, 드림스타트, 방문보건, 정신보건 등의 영역을 종합적 사정)
- 사정 후 필요한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으로 대상가구를 의뢰
- 필요 시 사후 관리 및 타 사업 사후관리 점검(의뢰한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희망복지지원단

- 고난도 사례의 통합적 욕구 조사를 통해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에 적합하다면 의뢰
- 통합사례회의의 수행: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간 조정 역할
- 타 사례관리 사업에서 사례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 시 참석 협조
- ※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부록3.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 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 의뢰, 타 사업 의뢰 대상자 접수 및 서비스 연계, 대상자 사례관리 종결 시 의뢰기관에 통보
- 통합사례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참여
- 사례회의 개최 시 참여 협조
- 사례관리 종결 시 의뢰 기관에 종결 통보, 통보 받은 의뢰 기관은 종결의 적절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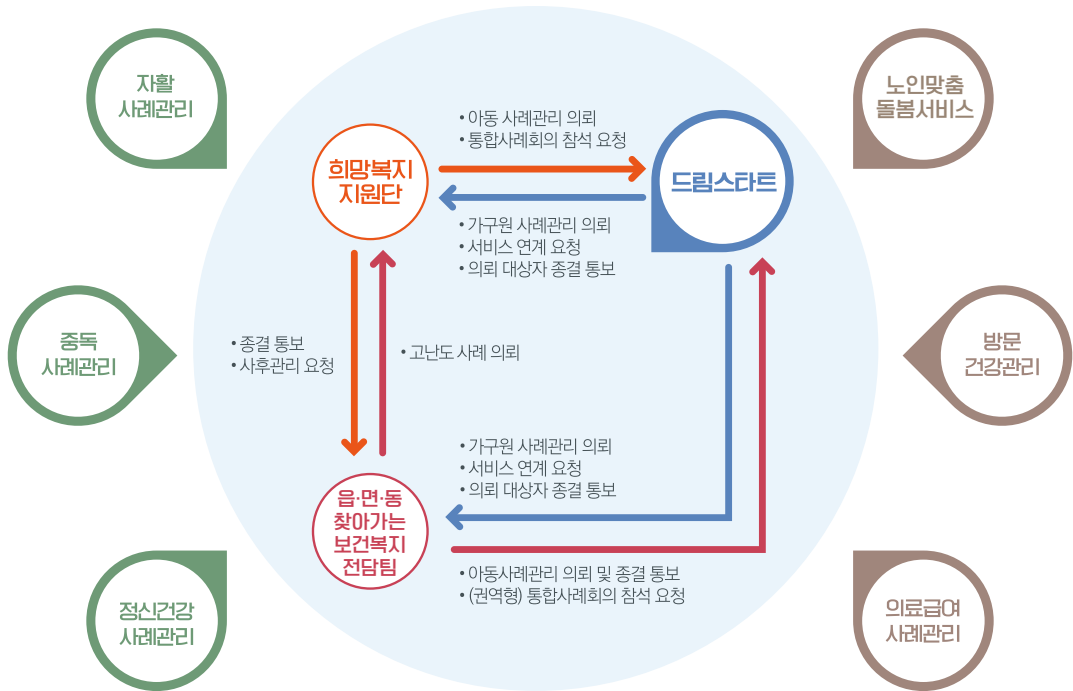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

- 방문형서비스 인력 간 연계·협력하여 초기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후 사후관리 수행

2

아동통합보호

읍·면·동이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과 드림스타트로 대상자를 의뢰하고,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 연계 등 요청



조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간 기능 연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게이트키퍼 역할수행) 종합사정을 통하여 대상자 욕구 따라 희망복지지원단 및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대상자를 의뢰

- 서비스 연계 필요 시, 통합사례회의 개최 및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 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종합적 욕구 사정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의뢰할 가구와 드림스타트로 의뢰할 가구로 분류하여 의뢰
- 아동 사례관리 필요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드림스타트

- 의뢰된 대상자에 대한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 이후 대상자 선정(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대상자 선정 사례회의 결과 및 선정 여부를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통보
- 선정된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발굴한 경우 아동의 욕구조사,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사정 이후 가구원 사례관리 의뢰 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 종결 후 의뢰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으로 대상자 의뢰

희망복지지원단

- 의뢰된 대상자 사례관리 수행 및 서비스 연계, 요청된 서비스 제공
 - ※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부록3.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이후 아동 관련 의뢰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의뢰 여부 결정)
- 종결 후 아동 관련 의뢰사유 발생 시 드림스타트로 대상자 의뢰
-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 구성 관련 필요 시 협조
 - * 아동복지기관협의체: 드림스타트 팀장을 주축으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워킹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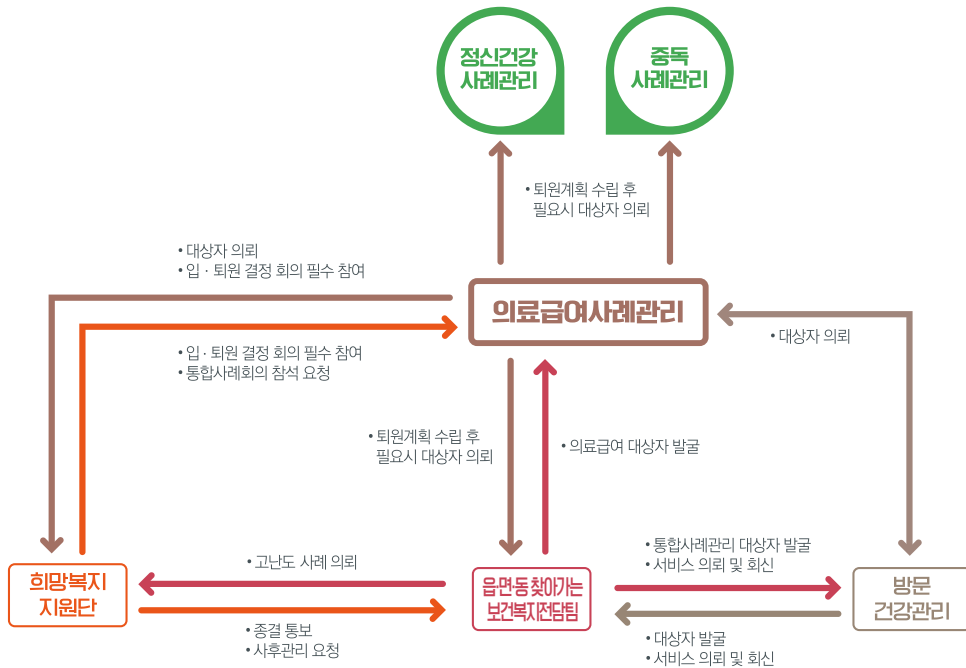
공통

- 서비스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해당 가구의 주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진행) 개최하고 해당 사례관리 담당기관 참석 및 협조 요청

3

보건복지 연계

의료급여사례관리를 통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방문건강관리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퇴원)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를 요청하고, 복지 영역과 연결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와 연계를 구조화



조직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의 의료급여-방문보건-정신보건-복지 연계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보건 및 복지 대상자를 발굴

의료급여사례관리

- 퇴원 후 의뢰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방문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의뢰

- 대상자의 의료급여관리사업 종결 시 복지 영역과의 연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와 연계 과정 구조화

각 사업별로 해당 사례에 대한 서비스 연계 필요 시,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사업 간 네트워크를 구조화

업무 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대상자 의뢰: 종합적 욕구 사정 후, 희망복지지원단,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수행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대상자 의뢰
- 의뢰된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제공: 의료급여사례관리(퇴원)대상자 및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초기상담을 통해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희망복지지원단의 고위험 가구 종결 후 사후관리 수행

희망복지지원단

- 대상자의 입·퇴원 결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사업 간 조정 역할(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참석 요청)
- 읍·면·동에서 의뢰된 고위험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수행

의료급여사례관리

- 퇴원 대상자 의뢰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방문건강관리 수행기관으로 대상자 의뢰
- 대상자의 입·퇴원 결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필수 참여

방문건강관리

- 필요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과 공동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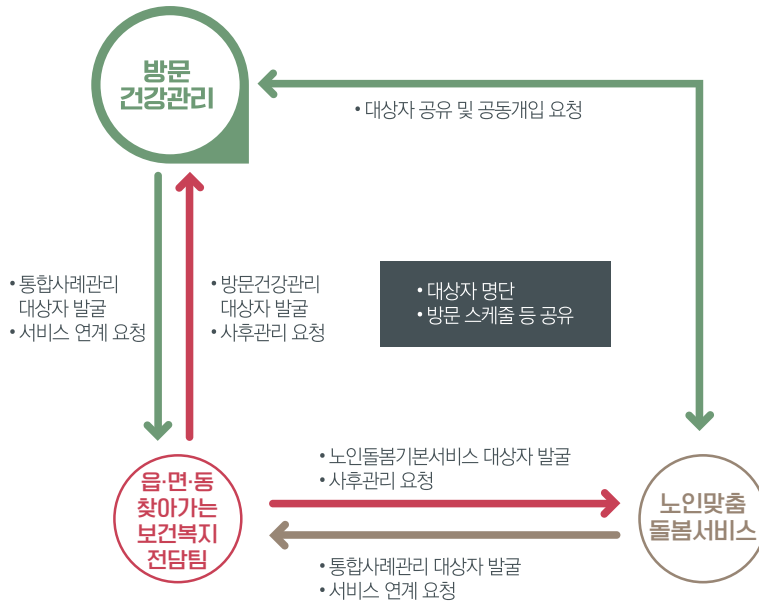
중독사례관리, 정신건강사례관리

- 의료급여사례관리(퇴원)대상자 의뢰 시 서비스 제공

4

방문형서비스 연계

읍·면·동, 방문건강관리, 노인맞춤돌봄 사업 간 방문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을 조정하면서 방문형서비스 간 연계·협력



조직

읍·면·동 단위에서 방문형서비스를 연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과 함께 초기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대상자 명단을 공유하고, 방문스케줄을 조정하며 방문형서비스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역할 수행

업무 내용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대상자 의뢰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의뢰된 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수행
 - ※ 서비스 연계 시 행복e음의 서비스 의뢰 가능 기관일 경우 행복e음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부록3.법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참고)
- 초기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진행(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방문형서비스 담당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마련 등 업무 수행 필요 시 협조
- 발굴된 고위험군 독거노인 사례관리 개입 계획 수립 시 협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대상자 관리: 건강취약 관리자 명단(건강보험공단 제공)
- 대상자 의뢰: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 등 의뢰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의뢰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초기 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협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대상자 관리: 취약노인 관리자 명단(시·군·구 제공)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의뢰 대상자
- 대상자 의뢰: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 등 의뢰사유 발생 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의뢰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초기 방문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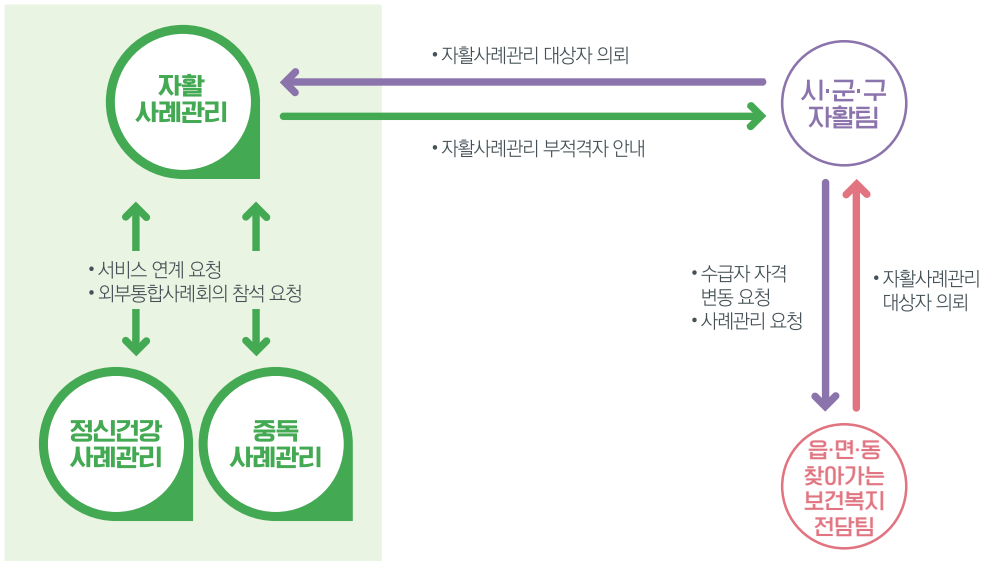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

- 방문형 서비스 인력 간 연계·협력하여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 수행

5

자활-정신보건 연계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에게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사례관리를 요청하고, 자활사례관리 부적격 대상자의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 실시



조직

자활사례관리와 중독 및 정신보건 사례관리 간 기능 연계

자활사례관리 사업

- 시·군·구의 자활팀을 통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자활사례관리대상자 부적격자를 의뢰하여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연계
-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사업으로 의뢰

업무 내용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시·군·구 자활팀으로 의뢰하면 시·군·구 자활팀에서는 지역자활센터로 의뢰
- 자활사례관리 의뢰 후 자활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자활팀에 안내
- 시·군·구 자활팀: 읍·면·동으로 자활사례관리 부적격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변동 요청 및 통합사례관리 의뢰
- 자활사례관리 대상자의 정신적 문제로 자활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통합관리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사례회의 참석 협조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부록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관련
사업별 지침



1.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40
2. 방문건강관리	41
3. 의료급여사례관리	43
4. 정신건강사례관리 및 중독사례관리(중독관리통합지원)	45
5. 통합사례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46

1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 사업지침 「2020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공공부문 연계 · 협력 관련 내용

수록 내용

라. 타 공공 사례관리 사업

※ 사업 간 상호 대상자 의뢰 시, 사전협의 후 공문을 통해 의뢰 절차 진행

1)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자활, 방문건강, 중독관리 등)에 의뢰하는 경우

● 자활 사례관리

- 가구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시·군·구 자활지원과로 연계

● 방문건강 사례관리

- 가구원 중 방문관리, 보건소 프로그램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으로 의뢰

● 정신건강 사례관리

-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중 아동정신건강 관련 욕구(ADHD, 우울 등)가 있는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 가구원 중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로 전문적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

● 중독 사례관리

- 가구원 중 알코올, 도박, 인터넷, 마약, 기타 중독 등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로 의뢰

● 의료급여 사례관리

- 가구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의료쇼핑, 중복처방, 입퇴원 반복, 사회적 입원 등 질병 대비 부 적정 과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으로 판단된 경우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부서로 의뢰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센터로 의뢰

2)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의료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자활, 방문건강, 중독관리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드림스타트는 의뢰받은 아동 대상가구에 가정방문하여, 초기상담과 사정을 수행하고 드림스타트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사업지침 「2020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방문건강관리)」

● 공공부문 연계 · 협력 관련 내용

수록 내용

3. 2020년 사업추진방향

- 보건-복지 연계 및 협업 강화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 추진
 - 대상자 발굴 사각지대 해소 및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행복 e음 권한 부여 추진
 -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회의 참석
 - ※ 요청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종결회의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장 혹은 담당공무원 및 전문인력 등이 참석하되, 참석자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

4. 보건소 내외자원 연계-연계 내용

- 보건서비스
 - (보건소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 (보건소 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광역정신보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건의료전문기관, 무료 수술 및 의료비 지원 등
- 복지서비스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통합사례관리사업-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등, 드림스타트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활사례관리사업) 의뢰 및 연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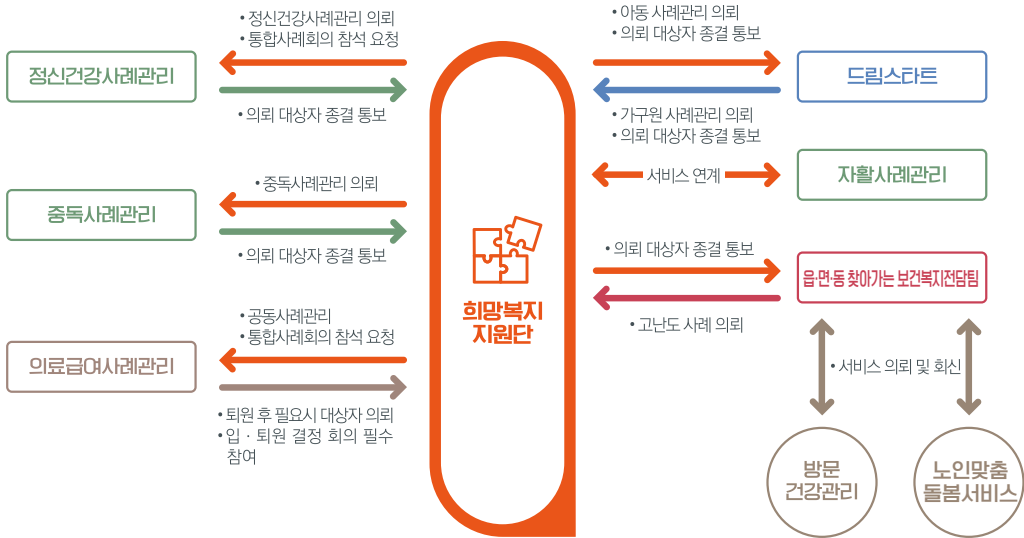
 - ※ 요청 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 사례관리회의(솔루션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회의) 및 종결회의에 방문건강관리팀장 혹은 담당공무원 및 전문인력 등이 참석하되, 참석자는 안건의 경중에 따라 결정
- 연계 주기: 필요 시
- 연계 내용
 - 대상자 발굴: 효율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타 사례관리서비스 대상자 정보 공유, 필요 시 합동방문
 - 대상자등록 및 군 분류: 대상자 방문 후 건강스크리닝 및 욕구사정 결과 타 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연계
 - 군별 관리: 서비스 수행 중 확인된 타 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연계
 - 대상자 재평가: 필요 시 타 복지서비스 연계
 -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 전담팀과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은 대상자 명단, 방문 스케줄 공유 등의 상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자료] 1. 공공부문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 기준

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

- 목적
 - 지역사회에서 각 사업간 서비스 내용을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건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계체계 마련

- 연계구성



구체적예시

- 사례 1 :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서비스 필요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 사례 2 : 일자리(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사업 등) 지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또는 지역사회 민간기관(복지관, 시니어 클럽 등)
- 사례 3 : 의료급여수급권을 최초로 취득하거나 부적정 의료이용 행태자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
- 사례 4 : 치매노인 또는 고위험군 및 치매환자 가족 → 치매안심센터
- 사례 5 : 장기요양등급판정 필요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례 6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관련 팀
- 사례 7 : 취약계층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향후 시·군·구 취약계층, 아동사례관리로 연계될 수 있음)
- 사례 8 :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
- 사례 9 : 정신질환/중독예방 서비스 필요자 → 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행복e음을 통한 서비스 의뢰 기능 활용

- **사업지침** 「20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 제4편 의료급여사례관리, IV.의료급여사례관리 수행-5.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 **공공부문 연계 · 협력 관련 내용**

수록 내용

5.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가. 목적

- 사례관리 대상자 중 요구되는 자원을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여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상자의 건강증진 향상도도 및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

* 공공부문 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활사례관리, 드림스타트

** 각 사업별 상세내용은 '2020 의료급여사례관리 업무매뉴얼' 참조

나. 연계대상

지속적인 관리 또는 서비스가 필요하여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각 사업별 관리기준 등을 확인한 후 연계

- 방문건강관리사업: 질환의심군, 건강행태위험군 등 건강취약 대상자
* 건강행태위험군: 흡연, 위험한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생활습관 관련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자
- 정신건강사업: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관리가 필요하고 등록 관리에 동의한 대상자
-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조현병(F00~F209), 양극성 정동장애(F31~F319)
- 중독관리사업: 알코올(F10~F109)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와 그 가족
※ 연계 제외대상: 알코올의 금단상태(F103, F104), 알코올 잔류 및 만기발병 정신병적 장애(F107)
- 통합사례관리사업: 다양한(복지, 주거, 교육, 법률 등)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 명확하지 않은 건은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팀으로 연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유사중복사업: 노인장기요양등급자,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등
- 자활사례관리: 직업상담 및 알선, 자활 및 일자리 사업 등 지원
-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하 아동 중 언어, 기초학습,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문제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대상자

다. 연계방법

연계대상,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하기 전 담당자와 상의 후 공문을 통해 연계요청 및 회신 결과 확인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사업」
 - 연계주기: 매월 1회
 - 회신주기: 매월(방문건강관리사업) / 분기 1회(정신건강사업)
 - 서식자원연계 의뢰서
 -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대상자의 정보가 요청한 서비스 제공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통합사례관리사업」
 - 의료급여사업 대상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사전 협의 후 협력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합동 방문 및 다각적 관리 실시

라. 의뢰받은 경우

- 건강상태, 의료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사례관리 여부 결정 및 결과회신

마. 사례관리 회의 참석

- 공공부문 사례관리 회의(예시: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회의-솔루션 회의, 권역형 읍·면·동 통합사례회의) 참석 요청 시 협조, 특히 대상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일 경우 반드시 참석
-

● 사업지침 「2020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 공공부문 연계 · 협력 관련 내용

수록 내용

나) 중증정신질환 조기개입체계 구축

- 공공 사례관리에서 초발정신질환자에 대한 초기상담 및 평가 요청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된 대상자에 한하여 공동 방문 상담을 실시

다) 개별적 서비스 계획의 수립과 제공

- 개별서비스 계획 수립 시 소득, 의료비, 주거, 자활, 건강관리, 돌봄 등의 사회보장 욕구가 있는 경우 공공부문 사례관리 기관(희망복지지원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 자활센터, 드림스타트, 의료급여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의뢰된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자 미동의로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뢰 기관에 알림

● 사업지침 「2020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안내」

● 공공부문 연계 · 협력 관련 내용

수록 내용

3. 운영체계

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고위험 독거노인(치매, 자살 위험, 학대피해 등) 관리 및 고독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 연계 및 협조

카. 자활관련 사업팀

–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중 자활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의 공동 운영 및 점검 등 유기적 연계 · 협력 체계 지원
– 특히 시 · 군 · 구 자활담당공무원 또는 자립지원직업상담사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고용-복지 연계 활성화
– 단, 자활경로 설정 등 전문적인 자활 · 고용서비스 연계 · 제공과 관련된 자활사례회의는 자활 관련 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복지 관련 연계 필요가 있을 경우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타. 보건소

– 희망복지지원단 사례회의에 방문건강관리사 또는 간호직 공무원, 필요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사례관리)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중독관리통합지원), 자살예방센터 근무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재활전문인력(장애인 건강보건 사례 관리)의 참여를 통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보건 연계 부문을 지원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대상가구의 특성상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통 · 반장, 읍 · 면 · 동 담당자 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담당자, 의료급여관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등과 동행 방문하고 아동/노인학대 사례의 경우 반드시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 방문

** 알코올 중독자 등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대상가구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인력(사회복무요원, 읍 · 면 · 동 복지도우미 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과 동행 방문

※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행 요건: 정신과적 문제 또는 알콜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 동의를 득한 후 방문

●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 공공부문 사례관리 간 정보 연계 필요 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의 제공받는 해당기관 명시 확인

－(통합사례회의)

- ※ 참석자: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희망복지지원단(팀장, 담당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필요 시 관련 서비스 연계 기관 담당자* 및 사례대상가구 관련 분야 전문가(복지, 법률, 정신건강 등)
- * 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정신보건 및 건강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을 것으로 판단·예측되는 대상자에 대한 통합사례회의 개최 시,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련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유관 기관과 협조해야 함
-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퇴원 관련 내용의 사례회의 개최 시 의료급여관리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협조해야 함
- ※ 타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등)에서 주관하는 사례회의에 개최 시 참석에 협조해야 함

II.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1.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운영 목적
2.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개요
3.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의의 기준 및 절차
4.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 연계·협력 체계 운영
 - 가. 읍·면·동 게이트웨이 및 희망복지지원단 코디네이터 강화
 - 나. 아동통합보호(읍·면·동-희망복지지원단-드림스타트)
 - 다. 보건·복지 연계(의료급여-방문건강-정신건강-복지)
 - 라. 방문형서비스 연계(읍·면·동-방문건강-노인맞춤돌봄)
 - 마. 자활-정신건강 연계(자활사례관리-중독-정신건강)

통합사례회의

(필수)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자, 해당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필요 시)해당 가구의 사례관리담당자(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료급여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종결회의

(필수)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담당자, 해당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자

(필요 시)해당 가구의 사례관리담당자(드림스타트, 자활사례관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의료급여관리, 방문건강관리, 중독사례관리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종결심사 필요 시 서면으로 가능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부록2

유관 기관 서비스 소개



1. 서민금융진흥원	50
2. 고용복지+센터	52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5
4. 한국토지주택공사	57
5. 지방의료원	59

1

서민금융진흥원

기관소개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서민층 자립자금 지원, 신용회복지원 및 자활·재기 지원 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서민금융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문의전화 국번없이 1397

홈페이지 www.knfa.or.kr

제공서비스 서민금융 종합상담(맞춤대출 서비스)

대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내용: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및 민간금융 회사의 일반 대출상품(중금리, 대환상품)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 중개

※ 56개 금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140여 개 이상 대출 상품을 비교, 분석

상품명	대상	내용
새희망홀씨	- 연소득3,500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원
햇살론17	- 연소득3,500만 원 이하인 자 - 연소득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 금리 17.9%, 최대 1,400만원
사잇돌	-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중금리 대출 상품 - 취급기관: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 연 금리 6~19.9%, 최대 2,000만 원 - 취급업권별 금리 상이
일반신용대출	-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으나 정책 금융 대상이 아닌 자 - 취급기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 금융회사별로 대출조건 상이

제공서비스 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미소금융)

대상: 창업예정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내용: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 자금(미소금융)을 지원

- (자영업자·취약계층 지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창업·운영자금 등을 연 2~4.5%로 최대 5년 지원
- (민간사업수행기관 지원) 서민금융생활 지원 사업을 영위하는 민간기관에게 사업자금을 무이자로 대출
- (전통시장 지원)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소액대출 지원
- (소액보험 지원) 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유지를 위한 비용 지원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최대) 2,000만원	(최대) 7,000만원	(최대) 500만원

자영업자 무료 컨설팅

대상: 컨설팅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

내용: 지역별, 업종별 전문 컨설턴트 150명이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 전수

※ 신청자 비용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지원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서비스업 등

비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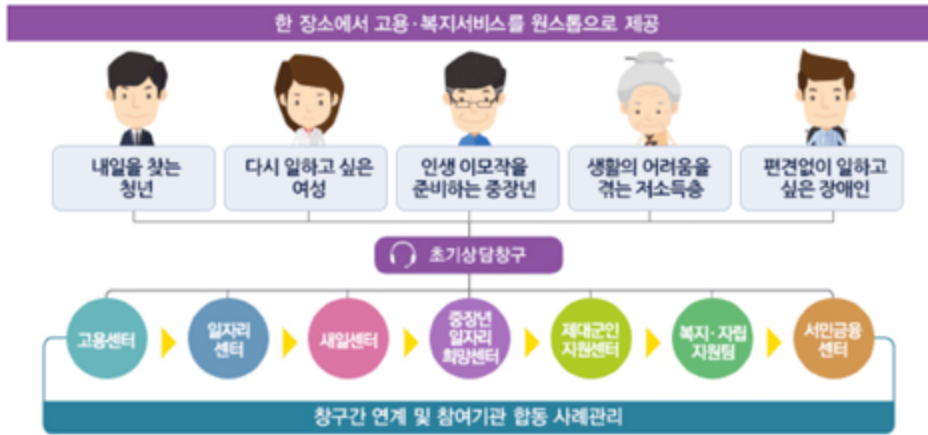
의뢰 대상

- 고금리 대출(사채, 캐피탈, 카드론 등)로 힘들어 하는 경우
- 신용등급이 낮아 주거래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고 안내 받은 경우
- 채무경감 등이 필요한 경우
- 저소득 영세 사업자 운영자금 필요한 경우

2

고용복지+센터

기관소개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한 곳에서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협업모델



홈페이지 www.workplus.go.kr

제공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최장 1년간 상담/진단/경로설정 > 훈련 · 인턴 등 직업능력증진 > 취업알선을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분		지원대상
I 유형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 연간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영세자영업자 - 취업취약계층(소득 제한 없음)* * 결혼이민자, 미혼모 · 한부모,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자, 노숙인 등
II 유형	청년층	- 소득제한 없음 - 만18세~34세의 비진학 청년, 대학교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
	중 · 장년층	- 만35세~69세,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원 -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자, 영세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1단계(상담, 진단)	2단계(직업능력향상)	3단계(취업알선)
I 유형	- 3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5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5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최대20% -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 취업성공시 최대 150만원 지급
II 유형	- 1주~1개월 - 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최장 8개월 - 훈련비 최대 30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자부담 15~50% - 참여수당 최대40만원(6개월)	- 최장 3개월

실업급여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급여 지급

직업훈련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직업진로상담지도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구분	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특성에 따라 12~15명의 소규모 그룹이 4~5일간 참여하여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취업특강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을 주제로 교육
직업심리검사	초·중·고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자신의 적성·흥미·진로방향을 제시

취업지원 및 상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의뢰 대상

- 자활사업대상자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등
- 본인 및 가구원 중 취업의사가 있거나, 직업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자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맞춤형 복지)급여 및 서비스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자, 최근에 실직한 자

기관소개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근거하여 1990년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20개 지사 5개 직능원, 20개 훈련센터에서 장애인 취업지원과 사업주 고용지원 사업을 수행

문의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콜센터 1588-1519

홈페이지 www.kead.or.kr

제공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에게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직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일정기간(3~7주) 배치하여 직업내용과 기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직장예절 습득이 되도록 지도하고 취업 연계지원

장애인 인턴제

취업이 어려운 특정 장애유형 중증장애인과 만50세 이상 장년장애인에게 인턴 근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정규직 전환 지원

장애학생 취업지원

고등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컨설팅→ 취업준비프로그램(견학, 체험프로그램, 일배움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졸업 후 취업 연계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원

- 기초부터 복합기술자 양성을 위한 개인 장애정도 및 학습 능력에 맞춘 직업훈련과 기업과 연계한 전문교육 진행
-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함평) 5개 직업능력개발원 운영

훈련센터

- 기업과 채용 약정을 하고, 단기간 실무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맞춤형훈련센터와 발달 장애인 교육에서 직업으로의 전환과정을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운영
- 서울, 인천, 경기, 천안, 창원, 전주, 제주 등 7개 맞춤형훈련센터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13개 발달 장애인훈련센터

민간 직업훈련기관 지원

-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 지원 47개 민간훈련 기관과 훈련생에게 비용 지원
- 훈련기관에게 훈련비(직종별 훈련단가),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

의뢰 대상

- 취업 및 고용육구 장애인
- 장애인 등록 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신청 시 맞춤형 서비스 안내과정에서 고용 육구(취업 및 직업훈련)가 있는 장애인
- 발달장애인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신청 시 취업알선, 직업훈련 육구 있는 발달장애인

기관소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의전화 LH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LH마이홈 1600-1004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제공서비스 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

소득계층별 주요 지원사업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고 분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개인 소득수준에 맞추어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유형



주요 자격요건

● **공급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1인이 신청가능

● **해당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세대구성원 전원은 소득 및 자산 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 대상

마이홈상담센터 주거복지상담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지원

상담분야



참고사항 (생애주기별 맞춤형주택)



5

지방의료원(공공의료복지연계사업)

기관소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포괄적이고 공익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20년 6개 의료원(수원, 속초, 영월, 공주, 순천, 마산) 수행기관으로 선정

홈페이지 www.pubnet.or.kr

제공서비스 공공의료 · 복지연계사업

의료 개입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견과 병원 치료, 치료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One-Stop창구로서 지역사회 내 보건 · 의료 · 복지 연계 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 환자 발견
→ 보건 · 복지 · 의료 연계 서비스
→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추후관리

공공의료 · 복지 서비스 의뢰 체계 구축

공공의료복지 연계 사업 수행 지방의료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복지연계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양방향(의료원↔지자체) 서비스 의뢰 통합 시스템 구축



① 의료지원 필요 대상자 의뢰(지자체→의료원)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공공의료복지연계망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으로 연계 및 의뢰

② 복지지원 필요 대상자 의뢰(의료원→지자체)

지방의료원에서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공공의료복지연계망을 통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서비스 의뢰 신청

서비스

의뢰 대상

- 의료비 부담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등),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노동자, 난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

•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부록3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 | | |
|---------------------|----|
| 1. 범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 62 |
| 2. 기관별 제공서비스 | 67 |

1

법정부 서비스 의뢰 체계 안내

가. 목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법정부)을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상호간에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각지대 해소 및 원스톱 복지서비스 실현 도모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개념

- (개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관할 지자체 및 부처(기관)로 상호 의뢰
- '서비스 의뢰'는 민원인의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기존 취약계층 발굴 경로에 더해 법정부 보장기관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서비스 의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처리 필요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원사무'에 해당하지 않음



활용 유형

구분	내용
기관 → 지자체	- 보장기관에서 지자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의뢰 ☞ 의뢰된 대상자를 접수, 상담하여 지자체 복지서비스 제공
지자체 → 기관	- 지자체에서 타 보장기관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의뢰 ☞ 복지 사각지대 조치 등 '복지대상자 발굴 업무'로 타 기관으로 연계

서비스 의뢰 활용 기관

'19.12월 말 기준 20개 보장기관에서 서비스 의뢰 활용, 단계적으로 보장기관 확대 및 지자체에서 타 보장기관 서비스 의뢰 연계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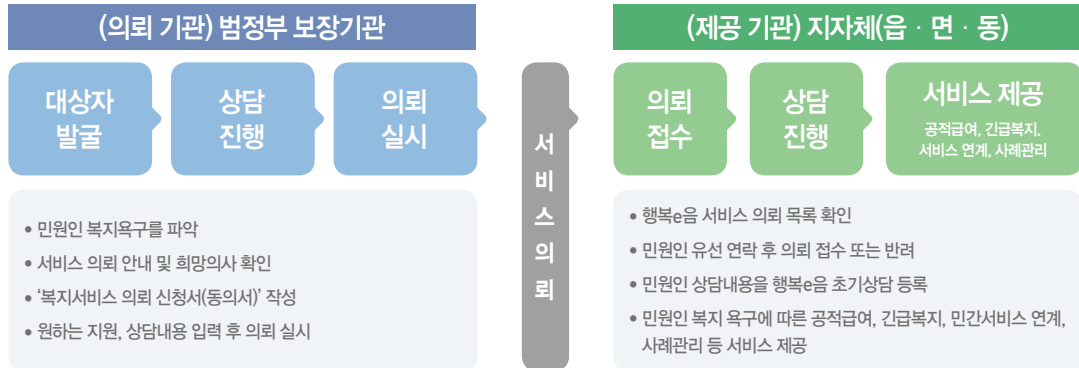
순번	기관명	지원 서비스
① 기관→지자체 단방향 서비스 의뢰		
1	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지원
2	병무청	생계곤란 사회복무요원, 병역의무자
3	국립암센터	보건/의료 지원
4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지원
5	경찰청	범죄 피해자 및 가족 지원
6	응급안전지원센터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지원
7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지원
② 지자체→기관 양방향 서비스 의뢰		
8	고용복지+센터	고용 지원
9	NH공사	주거 지원
10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 지원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 자살예방, 중독관리 대상자 지원
12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지원
13	공주의료원	보건/의료 지원
14	속초의료원	
15	안동의료원	
16	경기의료원	
17	마산의료원	
18	순천의료원	
19	천안의료원	
20	서귀포의료원	

※ '지자체→기관' 활용은 일부 지방의료원만 가능

다. 서비스 의뢰 절차 및 지자체 역할

기관 → 지자체 서비스 의뢰

- (개요) 보장기관에서 복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의뢰하고, 지자체가 복지 욕구에 맞는 지자체 복지 서비스(공적급여, 긴급복지,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제공
- (서비스 의뢰 절차)



- (지자체 역할) 서비스 의뢰 건에 대해 가능한 14일 이내 유선연락 후 의뢰접수처리 하고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서비스 제공

① 의뢰 접수

- 행복e음 화면에서 타 부처(기관)의 서비스 의뢰 요청 내용 확인
- 서비스 의뢰 요청내용을 참고하여 대상자에 대한 방문·유선연락을 통해서 원하는 지원과 희망하는 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행복e음 서비스 의뢰 접수·반려 의견 등록
- ⇒ 접수·반려의견은 서비스 의뢰를 요청한 의뢰기관으로 전달되어 민원인 상담 시 활용되므로 가능한 의뢰대상자에 대한 향후 조치내용 등 상세 작성 요청
- 서비스 의뢰 처리는 읍·면·동의 초기상담 권한이 있는 복지공무원이 수행 가능

② 초기상담 진행

- 행복e음에서 서비스 의뢰 접수 한 의뢰대상자의 기본 정보, 복지욕구,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초기 상담을 진행
- ⇒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검토
- 서비스 의뢰 접수 건을 선택 후 초기상담을 진행한 경우는 초기상담 접수경로가 '범정부 서비스 의뢰'로 선택됨

③ 복지서비스 제공

- 의뢰 대상자 욕구에 따른 지자체 공적급여, 긴급복지, 민간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 ⇒ 서비스 유형에 따른 처리단계별 처리내용은 서비스 의뢰를 요청한 의뢰기관으로 전달되어 민원인 상담 시 활용

• (활용사례)

(장애인고용공단 →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

“지자체 복지서비스 의뢰로 육아·경제 문제로 구직활동이 어려움을 딛고 구직 성공”

-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한 장애인 A씨(시각장애 4급)는 12살, 14살 두 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여성가장으로 육아와 경제적 문제로 취업이 쉽지 않음. 공단 담당자는 취업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비, 양육비, 학습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 구직 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의뢰를 통해 관할 지자체(읍·면·동)에 복지서비스를 의뢰
- ☞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은 공단에서 의뢰된 A씨를 상담 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생필품 지원 및 자녀들에게는 ‘드림스타트 사업(학습지원)’을 지원함으로 경제 여건 및 방과 후 시간 육아 부담이 현격히 개선되었고 이후 공단의 지속적 취업알선으로 본인 원하는 사업체(○○교육)에 입사함.

지자체 → 기관 서비스 의뢰

- (개요) 지자체가 민원인의 복지 욕구에 따라 보장기관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의뢰하면 보장기관은 의뢰된 대상자에게 지자체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
- (서비스 의뢰 절차)



• (지자체 역할)

- ① 대상자 발굴
 - 행복e음에서 민원인의 기본 정보, 복지욕구,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초기상담을 진행 ⇒ 읍·면·동에서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사전에 검토
- ② 의뢰 실시
 - 행복e음에서 민원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타 부처(기관)의 제공서비스 의뢰 신청
- ③ 서비스 제공 결과 확인
 - 행복e음 화면에서 서비스 의뢰 등록한 건에 대한 타 부처(기관)의 처리 결과 확인

• (활용사례)

지자체 →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 의뢰)

“서민금융진흥원 서비스 의뢰를 통해 고 금리 대출을 저 금리 대출로”

- 자녀3명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으로 월세 및 생계비 마련을 위해 보험·캐피탈 대출, 현금 서비스 등 고금리(10%~15%)의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음. 지자체에서 주거급여와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하나, 고 이율 대출 해결이 필요하여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서민금융 종합상담”의뢰함.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B씨에게 “서민금융종합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자립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고금리 대출(10%~15%)을 완납하고, 저 금리(3%)로 생활자금을 마련하였음.

2

기관별 제공서비스

▣ 고용복지+센터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실업급여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직업훈련	실업자, 자영업자 등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
직업진로 상담지도	다양한 직업 탐색 및 효과적인 취업기술을 습득, 자신감을 회복하여 신속히 취업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및 상담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구인업체에게는 구인업체 인력지원 서비스를 제공

▣ LH 공사(마이홈상담센터 56개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주거복지상담	(마이홈상담센터) 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부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p>서민금융 종합상담 (맞춤대출 서비스)</p>	<p>현재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 및 민간 금융회사의 일반 신용대출 상품(120여개 상품)을 비교·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상품을 안내·신청하고, 현재 본인의 신용과 부채를 분석하여 최적의 부채·신용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p>								
<p>자영업자 창업·운영자금 (미소금융)</p>	<p>창업예정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정부 지원 정책 서민금융 자금(미소금융)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자 <table border="1" data-bbox="425 761 1225 852"> <thead> <tr> <th data-bbox="425 761 694 807">운영·시설개선자금</th> <th data-bbox="694 761 962 807">창업자금</th> <th data-bbox="962 761 1225 807">무등록사업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25 807 694 852">2,000만원</td> <td data-bbox="694 807 962 852">7,000만원</td> <td data-bbox="962 807 1225 852">500만원 이내</td> </tr> </tbody> </table>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원	7,000만원	500만원 이내		
운영·시설개선자금	창업자금	무등록사업자							
2,000만원	7,000만원	500만원 이내							
<p>자영자 무료 컨설팅</p>	<p>경영진단이 필요한 자영업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소속의 전문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p> <table border="1" data-bbox="411 1083 1222 1412"> <tbody> <tr> <td data-bbox="411 1083 545 1161">지원내용</td> <td data-bbox="545 1083 1222 1161">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td> </tr> <tr> <td data-bbox="411 1161 545 1232">수행방법</td> <td data-bbox="545 1161 1222 1232">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td> </tr> <tr> <td data-bbox="411 1232 545 1335">지원업종</td> <td data-bbox="545 1232 1222 1335">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 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 업종</td> </tr> <tr> <td data-bbox="411 1335 545 1412">비용</td> <td data-bbox="545 1335 1222 1412">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td> </tr> </tbody> </table>	지원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 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 업종	비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지원내용	상권 및 입지분석, 경영진단, 사업성분석, 홍보 및 마케팅, 점포운영, 프랜차이즈, 고객 서비스, 인테리어 및 익스테리어, 세무·회계 등								
수행방법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2회 방문해 경영진단, 상권분석 장·단기과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보고서 제공								
지원업종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의류도소매(악세사리 포함), 화장품도소매, 기타 도소매, 이·미용(네일아트포함), 세탁업, 자동차 관련업, IT관련업(온라인쇼핑몰포함), 오락·문화·운동 관련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 업종								
비용	신청자 부담은 없으며,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급								

▣ 지방의료원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상담서비스	심리사회적 · 경제적 상담, 퇴원계획상담, 지역사회 자원연결 상담 서비스 제공
외래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외래 의료서비스 지원
입원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입원 의료서비스 지원
응급서비스	의뢰 환자에게 응급 의료서비스 지원
가정간호	거동이 어려운 환자 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지원	의뢰환자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보호자 없는 병실	보호자 및 개인 간병인이 없는 환자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연계	보호자 없는 환자에게 공동 간병인 인력 지원 서비스
원내진료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진료비 지원
차량지원서비스	거동이 어려워 병원에 내원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이송지원 및 연계
원내물품 지원	응급입원, 무연고 환자 등에게 치료에 필요한 물품 지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등록 및 개별 교육 상담, 정기조사
금연교육	금연교육 프로그램 제공
고령자 지원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국가지원사업 대상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저개발국 환자 지원	저개발국 환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외국인 노동자 지원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행려환자 지원	노숙자 환자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북한이탈주민 의료서비스, 의료비, 물품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중증 정신질환 상담 (성인)	만 19세 이상의 정신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 (단, 간질, 정신지체, 치매는 제외)
아동·청소년 상담	만 18세 이하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 (단, 간질, 정신지체, 치매는 제외)
자살예방 상담	자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주변인을 대상으로 정신적 문제를 해소,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자살유가족, 자살고위험군 포함)
중독관리 상담	중독으로 치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지원서비스

☞ 장애인고용공단

제공서비스	서비스 설명
취업지원 및 상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구직자와 구인업체에게 취업알선, 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학생 취업지원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 안내

인쇄 2020년 2월
발행 2020년 2월
발행처 사회보장정보원 사례관리정책지원센터
(04554) 서울 중구 퇴계로 173 (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홈페이지 www.ssis.or.kr
디자인/제작 디자인세륜 02)2273-5167

비매품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